

1. 개정이유

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·인권보호
전담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
강화할 필요

2. 주요내용

-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자격 요건 강화(안 제69조제5항)
 -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은 사례에 대한 문제
제기로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·인권보호
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자격
제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보호 업무 구현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9. ~ 1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.

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
2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
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톱킹 행위
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음주운전, 음주측정불응, 음주측정방해 행위, 약물운전
5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·요구·약속(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임·지정된
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은 제69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
해당 직책에서 이임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인권보호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9조(인권보호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 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 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.</u> <u>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</u> <u>2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 매매 관련 범죄</u> <u>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톱킹행 위</u> <u>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음주 운전, 음주측정불응, 음주측정 방해행위, 약물운전</u> <u>5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</u>

	·요구·약속(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